

농림축산식품부 시 정 요 구

제 목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 부적정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양양군

내 용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管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유지(溜池: 웅덩이), 도로(농도(農道) 등 농로 포함), 방조제, 제방(堤防: 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이다.

또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르면 농업생산 기반시설 관리자는 농업생산 기반시설에 대하여 항상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시설물의 개수·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하수법」 제20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내지 제12조에 따르면 농업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는 정기적으로(농업용수는 준공신고 후 3년 주기로 1회 수질검사) 지하수 관련 검사 전문기관으로부터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농업용 대형관정에 대해 항상 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수질검사를 받는

등 농업용수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강원도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양양군에서는 관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업용 대형관정 1,161개 중 165개 관정(14.2%)에 대해서는 [표]와 같이 정기검사 기간이 경과 하였는데도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표] 농업용 대형관정 수질검사 미실시 현황(2016. 9월 기준)

시·군	보유 관정수	정기 수질검사 현황 (2013.1월 ~ 2016. 9월까지)		최근 점검연도별 정기검사 미실시 관정수
		실시	미실시	
합계	1,161	996	165	
원주시	97	97	-	
삼척시	106	106	-	
횡성군	125	125	-	
영월군	59	28	31	(2013년) 31
평창군	5	5	-	
정선군	32	29	3	(2013년) 3
철원군	270	159	111	(2008년) 1, (2009년) 44 (2010년) 23, (2011년) 13 (2012년) 3, (2013년) 27
화천군	81	81	-	
양구군	141	141	-	
인제군	57	57	-	
고성군	61	61	-	
양양군	127	107	20	(2013) 20

조치할 사항 영월군수, 정선군수, 철원군수, 양양군수는

정기 수질검사 기간이 경과한 관정에 대하여 수질검사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 계획이 수립된 경우 계획대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영농철 농업용수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